

프랑스 「반론권」 해설(1)

이 글은 Henri Blin(프랑스 대법원 명예부 재판장), Albert Chavanne(리옹대학교 법경제학부 교수), Roland Drago (파리대학교 법경제학부 교수), Jean Boinet(파리항소법원 감정인, 출판연구 및 법률국 국장)등 4 인의 공저인 「출판법 (Droit de la presse: Librairies Techniques, 1982)에서 프랑스의 「반론권」 (Droit de reponse)에 관한 해설부분을 번역한 것이며, 지면 관계상 이번 호부터 3 회에 나누어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1. 정의

반론권은 특정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이 해당 매체에 그 보도에 대한 자신의 반론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권리다.

2. 역사

1881년 법 제 13조에 규정된 이 권리는 이미 뷔드돔(Puy de Dome, 편집자주: 지명임)의 의원인 뉘로르(Dulaure)에 의해 7년에 걸쳐 제기되었다. 뉘로르의원은 보도에 의해 일반국민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그 회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개입할 것을 500인 회의(Conseil des Cing-Cents; 1795년부터 1799년까지 의회역할을 했음)에 제의했다. 그러나 1822년 3월 25일 제정된 출판법 제 11조는 지금의 반론권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언론보도의 명예훼손 여부에 관계없이 의견의 개진을 인정한 것이다. 뒤에 언급되는 각종 법의 규정들은 이렇게 시작된 반론권의 모습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1835년 9월 9일 법은 반론의 대상이 되는 기사크기의 두배까지의 반론문은 무료로 게재하거나 그것을 초과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반론제기인이 지불한다는 조건하에서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81년 법 제 13조는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1919년 9월 29일 법과 1944년 8월 26일 명령, 1946년 10월 5일 법등은 반론권에 관한 몇 가지의 세부조항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반론권의 원칙 자체와 근거는 바뀌지 않았다.

3. 근거

반론권은 인격에 관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신문 혹은 정기간행물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자는 해당 매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이나 견해를 독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다. 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독자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도록 했다. 어떤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면, 해당 정기간행물은 공개토론의 장에 서게 된다. 신문은 그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국민의 행동이나 인격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반면에, 일반국민은 그의 인격을 존중 받을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일반국민은 반론을 제기하여 독자적인 그의 견해를 해당 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앵글로 색슨 지역에서는 반론권을 인정하고있지 않다 그들은 오랜 자유주의의 관습과 참된 민주적 의식을 기초로 독자투고난을 현명하고도 개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반론권

행사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문제는 프랑스에서 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4. 범위

1881년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표현의 방법을 언어, 인쇄물, 도안, 그림, 레코드, 영화,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등 광의로 규정하였지만 반론권에 대한 실질적인 행사는 오랫동안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국한되어 왔다. 그래서 1881년법 제거조는 신문에 게재될 반론문의 크기와 지면, 행수, 그리고 배포지역을 명시함으로써 반론권을 오직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그래서 법원은 동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영화나 텔레비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라디오방송에 대한 반론권의 행사를 거부했는데 오늘날 출판물보다도 더 큰 영향력과 청중을 가진 라디오 뉴스나 텔레비전 뉴스가 반론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하겠다.

입법연구회는 1933년부터 라디오에도 반론권을 인정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몇몇 토론회와 수 많은 논설, 학술서 등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1972년 7월 3일 법 제 8조에 비로소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대해서도 반론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이 조항은 1974년 8월 7일 제정된 방송조직법에 다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권리의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는 1975년 5월 13일의 n 75-341 법영에 규정되었다. 이 반론권의 적용범위와 집행방법은 정기간행물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기때문에 이는 별도로 신중히 열거할 가치가 있다.

단행본에 대한 반론권 행사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한 작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그 문제를 법률에 호소한 경우보다는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다.

5. 연구계획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대한 특수한 반론권 제도를 제 1장에서 정토했 후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권 행사의 조건 반론권의 행사, 그리고 반론권에 관한 처벌규정을 연구한 것이다.

1 장,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반론권

6. 해결의 실질적인 어려움.

언뜻 보기에는 1881년 법 제 13조 규정을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 적용하는 것은 그다지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반론문의 문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방송의 경우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권과 동일한 권리를 허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국민은 주요 청취시간대가 반론방송으로 채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반론방송은 주간 방송하도록 할 것과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선택한 신문에 반론문을 게재할 것도 제안되었다. 방송조직법은 반론권행사의 범위를 더욱 축소했다. 1974년 8월 7일에 개정된 방송조직법 제 34 조에는

1972년 7월 3일 제정된 방송조직법 제 8조를 존속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대한 반론의 원칙을 잘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 사회적 평가, 혹은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정부기관에 의해 행해졌을 경우는 반론권의 행사를 제한한다. 이 권리는 1975년 5월 13일에 개정된 방송조직법에 실질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그 법과명령이 합헌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다.

7. 반론권의 범위

방송조직법에 규정된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대한 반론권은 1881년 법 제 13조에 규정된 반론권의 범위 보다 몇 가지 관점에서 축소, 제한하고 있다 첫째) 그 반론권은 반론제기의 원인이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개인의 명예, 사회적 평가, 혹은 이익을 훼손시키는 비난일 경우에만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오직 사람만이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협회, 조합, 사회공공기관 혹은 모든 종류의 집단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그들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 반론권의 행사가 국내 텔레비전과 라디오방송 채널에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국경에 근접해 있는 지역의 방송국 즉 유럽 No1, 몬테카를로 라디오, 남부라디오 등에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도 문제가 대두된다.

8. 반론권 행사의 방호

라디오방송과 프랑스 텔레비전방송에 대해 반론권을 인정한 것은 1975년 5월 13일에 개정된 n75-341 법영이다. 반론은 피해당사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부재시 (그가 사망했거나 무능할 경우), 그의 직계 상속인이나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다. 비록 법영에는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자에 대한 반론권은 1881년 법 제 34조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관대하게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자의 반론권 행사에는 명예훼손이나 비난에 대한 사실증명이 필요하다.

반론은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국영프로그램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만 한다. 반론신청서는 문제의 내용이 방송된 지 1주일 이내에 배달증명우편으로 우송되어야 한다. 반론신청서에는 방송이 행해진 날짜 및 시간, 신청인의 명예, 명성 등 모든 이익을 공격한 비난내용, 그리고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내용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국영프로그램협회의 장은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된 반론신청서를 접수한 후 1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된 방송이 해외에서 수신되었을 경우 통지기간은 2주간이다. 이 기간 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에는 반론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론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반론방송은 분쟁이 된 방송과 동일한 청취조건하에서 행해져야만 한다. 방송국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그 결정에는 방송시간과 날 그리고 반론문의 양식과 방법,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만약, 반론신청이 거부되거나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국영프로그램협회의 장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청인은 1주일 이내에 방송조직법 제 6조에 규정된 반론권 전국위원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하는 모든 신청서에는 이유를 첨부하고 제 23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반론권전국위원회는 국무총리 또는 그 권한을 부여 받은 장관 아래에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헌직 또는 전직 참사원(최고행정재판소)의 부장 또는 평정관 1명 (의장), 참사원 구성원 1명 또는 전직 대법원 구성원 2명, 방송위원회 구성원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구성원에 결원 또는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보충할 수 있다. 라디오, 텔레비전방송국, 그리고 사회체제 리사회의 임원이거나 대리인은 반론권전국위원회의 구성원이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반론권전국위원회는 결정을 위해 여러 판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영프로그램협회는 반론권전국위원회의 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 특히 문제된 방송의 기록들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즉시 그 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론의 방법과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 결정은 당사자와 국영프로그램협회의 장에게 통보된다 또한 위원회는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결정을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보고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론권전국위원회는 반론권에 대한 인정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국영프로그램협회의 장은 반론방송을 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관계없이 1천프랑에서 2천프랑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대해 자주 반론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반론권이 갖고 있는 결함은 보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반론권전국위원회의 결정이 어떠한건 반론을 제기한 당사자는 불법행위나 명예훼손의 경우 민사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송책임자를 형사상으로 고소할 수 있다. 민사상 과실의 경우 1975년 5월 13일 법영전에도 민사책임소송에 관한 재판에서 프랑스방송협회에 대해정정보도 방송을 하도록 명령한 사례도 있다.

제 2 장 반론권 행사의 조건

9. 어떤 사람이 먼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그 다음은 반론제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출판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 1, 누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0. 개인의 반론제기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서 지명 또는 제시된 모든 사람들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적 개인으로서 거명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장관 등 직책이 보도대상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반론권에 있어서는 그들이 개인보다 더 많은 권리를 부여 받지 못했다. 반론권은 단지 사적개인으로서만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명성이나 직책에 의한 권한, 또는 신분을 고려하여 인격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1881년 법 제 12 조의 정정의 권리,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에 관한 제 31 조와 제 33 조, 그리고 모독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규정은 그들이 반론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도 또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인 경우 법적 자격을 가진 대표자가

반론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읍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론을 제기해야 할 경우 그 지역의 읍장은 그 지방의 이익을 위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반론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법인만이 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어떤 대본이 비평받았을 경우 반론권 행사의 자격은 극장 주인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본작가에게 부여 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그 자체로 지명되지 않고 법인의 대표자로만 지명되었을 경우 반론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11. 생산품에 관한 반론청구

사람이나 법인이 아닌 생산품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도 반론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생산품과 사람 및 법인이 지명이나 지시되었을 경우 그들의 생산품에 대한 반론권은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기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중이 생산품의 생산자나 판매자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경우에도 동등하게 반론권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법인과 그들이 공중에게 제공하는 생산품과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므로 생산품의 품질은 법인 자체에 대한 공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 민사책임소송이나 비방에 대한 불공정경쟁소송뿐만 아니라 반론권의 행사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인격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 관계는 간접적이지만 반론권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다. 모든 불공정경쟁소송에서와 같이 생산품에 대한 비평에서 특정한 상업 또는 산업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 거명이 없을 경우에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

12. 사자와 관련된 반론권

사자에 관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내용에 대해서도 반론권이 행사될 수 있다. 1881년 법제 34 조는 사자에 대해 일반적인 반론권보다는 더 제한된 특수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난만이 반론의 대상이 된다. 1881년 법 제 34 조는 후계자, 배우자, 그리고 포괄적인 유산상속자가 「항상」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법해석학에서는 매우 관대하게 어떠한 후손이든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비평할 수 있는 권리와 반론권의 관계는 매우 곤란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9년 9월 29일 법은 1881년법 제 34 조를 개정한 것이다 특히 「항상」이란용어를 삭제하면서 반론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난을 규정했다. 사자의 명예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자 자신을 위해 보호되는 것이므로 문제된 내용이 단순한 오류에 의한 것인 경우, 즉 사자에 대한 비난이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반론권이 행사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작가의 오류로 인하여 상속인이 입은 피해는 브랑리 (Branly) 판결의 범위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은 상속인의 반론권 행사를 매우 제한하고 있다. 상속인은 역사가가 충분한 근거 없이 경솔하게 사자를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에만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고 사자를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충분한 근거에 의한 비난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권 행사는 일종의 권리남용으로 간주된다. 아직도 직계 상속인의 반론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판례로는 명예훼손을 당한 사자의 후손에 대해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느(Seine) 경범법원의 판결을 들 수 있다.

리는 이 제한적인 판례가 상속인의 반론권을 지나치게 제한했고 명예훼손의 수법과 그에 대한 반론권의 방법에 대해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다. 틀림없이 제 34 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경우에만 반론권을 인정하였다. 어쨌든 그것은 반론권에 관한 규정인데 가장 최근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만으로 그것을 제외시키기에는 역사가의 성실성과 신중성이 충분하지 못했다.

1881년 법 제 34 조 2 항에 대한 적용의 실마리를 모색하고자 하는 최근 사건의 성격에 대한 결정은 제 34 조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

직계 상속인이나 배우자 또는 사자의 유언집행인이 살아 있는 한, 사자의 인격은 개인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랑들의 정신에 여전히 살아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 비평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인격보호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법률이 살아 있는 사랑에 대해서보다 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제한적이고 사자에 대한 비난이나 명예훼손인 경우에만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자의 인격이 사자를 알고 있는 사람의 기억으로부터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론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대로 반론권 행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배우자, 직계 상속인, 포괄적인 유산상속이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사자의 삶을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판단에서 일 뿐이다. 그래서 반론권은 민사소송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제 34 조 1 항에 따라 작가가 사자를 비판하기 위한 글에 의해 살아 있는 상속인을 비난했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됐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행사할 수 없다.

13. 특정한 개인의 지시

특정한 사람이 지명되지 않아도 표제나 본문 혹은 저술자료에 의해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으면 된다 모호하게 언급되더라도 공중이 그 자신이라고 인지할 수만 있으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반론권행사의 요인을 반론이 제기된 기사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장의 사진에 실린 특정인에게도 반론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의 경우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진 설명이나 기사본문에서 특정인임이 인정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한편, 동명리인이 있을 경우 그 중 어떤 사람이 지시되고, 그리고 착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동일한 신문에 반론을 제기 했던 X 씨와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권리의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반론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그렇지만 반론권을 구실상에 피해망상을 두둔할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 자신이 지시되었다고 느낀다. 게다가 멋지게 반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론의 대상이 되는 기사에 그들이 지시되었음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요소가 없을 경우, 그들의 반론이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 의사가 의사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의 기사가 정보의

대상으로 어떤 진주수입업자를 지적하였을 경우 거기에 지명되지 않은 진주수입업자는 반론권을 사용할 수 없다 사람들은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지명되어야 한다. 증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문제된 기사가 그를 지명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반론권을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의 책임이다. (다음 호에 계속)